FTA 동향

- 즉석면류(라면 등) 수출 역대 최대
- KOREA CUSTOMS WEEK 2023
-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출관세 연 6.6조 원 이상 절감
- 국가별 동향
- 원산지 포괄확인서 작성방법

E REPORT

즉석면류(라면 등) 수출 역대 최대

지난해('22년) 즉석면류(라면 등) 수출 8억 6천 2백만 달러(전년대비 12.0%↑) 역대 최대 실적이다.[1]

코로나('20년~) 기간에도 지속적 증가세로 매년('14년~) 역대 최대 수출 기록 경신 중이다. '11년 2억 달러 → '19년 5억 달러 → '22년 8억 달러를 돌파했다.

코로나에도 불구,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며 성장세가 가속화(5억 달러 돌파 이후 3년 만인 지난해 8억 달러 돌파)되었다.

올해 1~2월(누적) 수출 또한 동기간 최대인 1억 4천7백만 달러를 기록(전년동기대비 19.0%↑), 또 한 번 기록 경신을 기대한다.

이 증가의 요인은 간편식 수요, 케이(K)푸드 인기, 문화상품 도약이다.

간편식 수요는 코로나 기간 자가격리·재택근무 등으로 가정 내에 머물며 저장 및 조리가 간편한 즉석면류 수요가 증가하였다.

* 연평균 수출액: '17~'19년(코로나 전) 4.8억 달러 → '20~'22년(후) 7.7억 달러, 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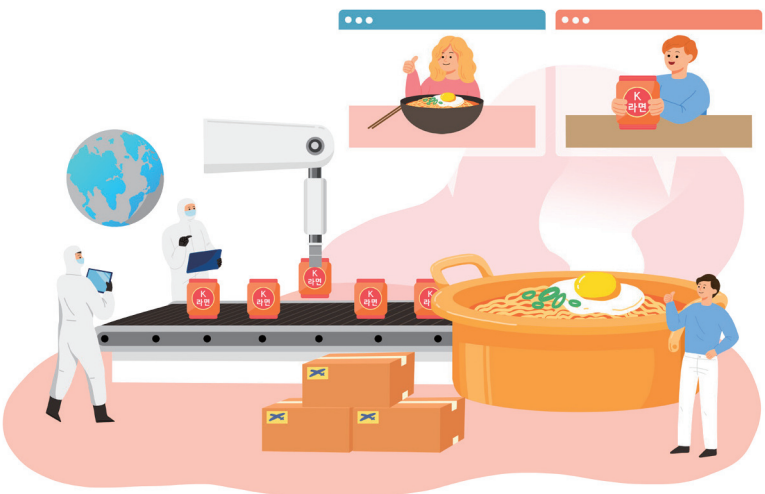

1 '22년 수입은 3천 3백만 달러로, 수출의 3.8% 수준

케이(K)푸드 인기는 한국 문화·음식의 세계적 인기 속에 영화, 방송 등을 통해 대표 케이(K)푸드로 각인된 것이다.

문화상품 도약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세계적 시식 도전(fire noodle challenge)이 유행하는 등 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즉석면류 수출 규모는 지난해('22년) 수출 중량 26만 톤 역대 최대(전년대비 10.3%↑), 최근 10년 동안 약 4배 증가('12년 6.6만 톤 → '22년 25.7만 톤)하였다.

즉석면류 26만 톤은 봉지(120g) 포장 기준 약 21억 개에 해당, 면발 길이만 약 1억㎞로 지구를 2,670바퀴[2] 돌 수 있는 길이이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에 해당하는 수출 규모[3]이다.

품목으로는 일반 라면에서 짜장·불닭·할랄(이슬람에서 허용한 식품) 라면까지, 최근에는 생면, 우동, 국수 등 제품 다양화로 인기몰이가 지속 중이다. 라면은 '22년 7억 6천5백만 달러(전년대비 13.5%↑) 수출로, 역대 최대에 이어 올해(1~2월)도 1억 3천2백만 달러(19.8%↑)로 최대 실적이다.

'14년 이후 매년 최대 수출액 경신, 대표 케이(K)푸드 상품으로 즉석면류 수출을 견인('22년 즉석면류 중 라면의 수출액 비중 89%)[4]하고 있다.

【즉석면류 수출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

		'19년	'20년	'21년	'22년	'23.1~2월
즉석면류		529 (10.8)	686 (29.8)	770 (12.2)	862 (12.0)	147 (19.0)
	라면	467 (13.0)	604 (29.2)	674 (11.7)	765 (13.5)	132 (19.8)
	기타 (생면, 우동 등)	62 (△3.8)	83 (34.1)	95 (15.6)	97 (1.7)	15 (12.4)

* 밑줄은 해당 기간별 역대 최대 수출액임

2 한 봉지의 면발 길이는 50m, 지구 둘레는 40,075㎞로 계산
3 세계 순위: 1위 중국(46만 톤), 3위 인도네시아(18만 톤) [유엔 컴트레이드, '21년]
4 '22년 라면 수출량 22만 톤(18억 봉지), 면발 길이 9천만㎞(지구 2,245바퀴)

【'22년 수출국가 현황(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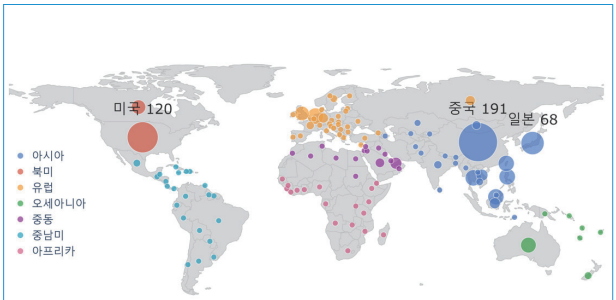

*원의 크기는 국가의 상대적인 수출 규모를 표시

143개국 8억 6천2백만 달러

【대륙별 수출액 변화('19년 → '22년, 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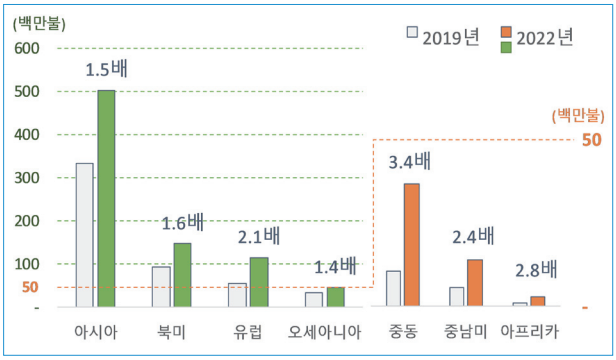

기타 사항은 '22년 9천7백만 달러(전년대비 1.7%↑) 수출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이다. 생면, 우동, 국수 등 다양한 상품 출시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라면 못지않은 수출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즉석면류가 수출되는 국가는 '22년 중국 > 미국 > 일본 등 세계 143개국으로 역대 최다 수출되었다. 코로나('20년~) 시기에도 6개(가이아나, 감비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카보베르데) 나라에 최초 수출하는 등 매년 수출국이 확대되었다.*

*('19) 136개국 →('20) 137개국 →('21) 141개국 →('22) 143개국

특히 가이아나(중남미), 카보 베르데(아프리카)는 작년('22년)부터, 감비아(아프리카)는 올해(1~2월)부터 최초 수출(연간 1천 달러 이상)을 하였다. 아시아, 북미, 유럽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 음식 불모지였던 중동, 아프리카 등의 수출도 늘며 세계 시장이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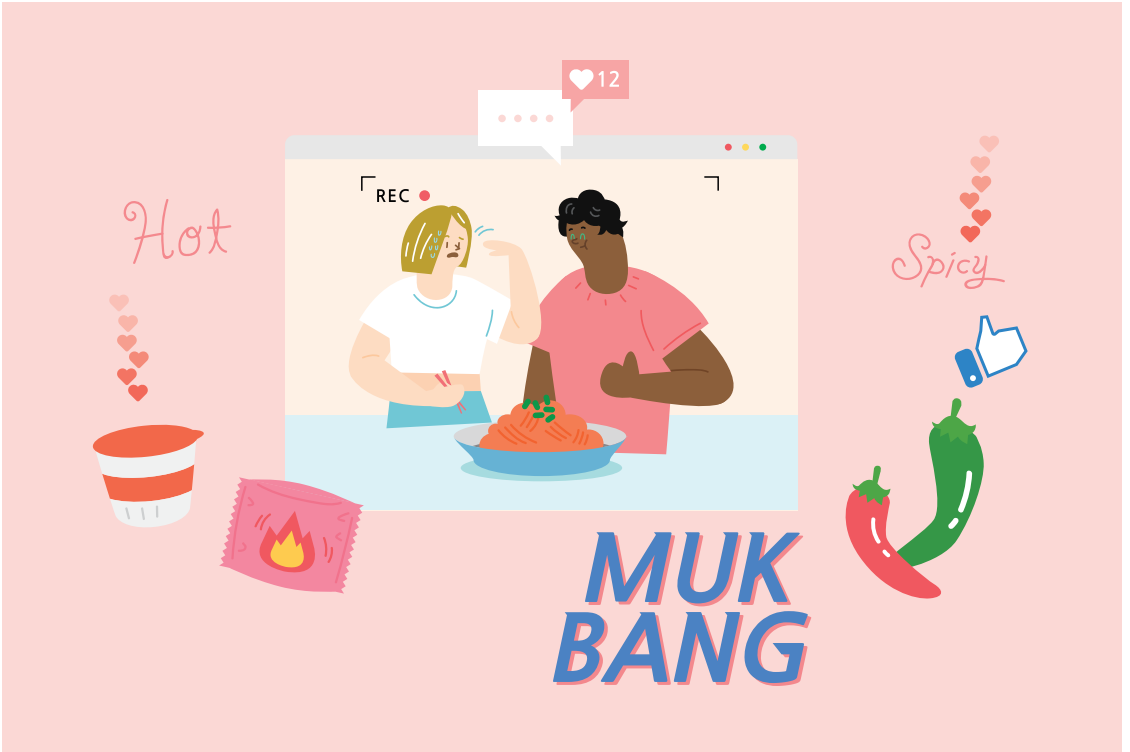

【즉석면류 국가별 수출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

순위	'20년			'21년			'22년			'23년 1~2월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1위	중국	153	19.8	중국	155	1.4	중국	191	23.1	중국	34	56.1
2위	미국	121	54.2	미국	123	1.5	미국	120	△1.9	미국	20	△13.3
3위	일본	61	51.8	일본	73	19.4	일본	68	△7.3	일본	10	△0.8
4위	태국	28	38.3	대만	33	33.6	필리핀	34	6.1	네덜란드	10	331.5
5위	필리핀	25	64.1	필리핀	32	26.1	네덜란드	34	49.7	말레이시아	6	17.1
기타	132개국	298	20.8	136개국	354	17.6	138개국	416	14.1	103개국	68	10.3
	전체	686	29.8	전체	770	12.2	전체	862	12.0	전체	147	19.0

관세청·한국원산지정보원

KOREA CUSTOMS WEEK 2023

4월 26일(수), 한국 관세청이 사상 처음으로 주최한 행사 「케이-커스텀즈 위크(K-Customs Week) 2023」(이하 KCW 2023)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하였다.

(라운드테이블/09:30~12:00) 전 세계 78개국 관세당국은 '국제 관세협력과 디지털 세관'을 주제로 각국의 정책 경험과 인식을 공유했으며, 57개국은 「서울 선언문(Seoul Declaration)」을 발표했다.

(개회식/14:00~14:30) 한덕수 국무총리, 존 베섹(John Bescec) 국제상공회의소 관세무역위원회 의장, 19개국 주한 대사, 진기주 관세청 홍보대사 등 국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이 개최됐다.

(메인 세미나/14:40~16:00) 국제관세대학연합 사무국장, 세계무역원활화연맹 사무국장, 세계관세기구 능력배양국장 등 전 세계 관세 분야 주요 전문가들이 참석한 메인 세미나가 개최됐다.

(양자회의/15:00~18:45) 윤태식 관세청장은 11개 관세당국(미국, 콜롬비아, 이스라엘, 과테말라 등),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12개 기관과 양자회의를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K-Customs Week 2023 홈페이지

(비즈니스 세션/09:00~18:00) ▲'24개 해외 관세당국-28개 우리 기업' 간 개별(1:1) 비즈니스 미팅이 시작되는 한편, ▲최첨단 관세행정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연구진 등이 KCW 2023 참여 관세당국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관세기술 홍보에 나섰다.

(환영 만찬/19:00~21:00) 공식 환영 만찬에서는 전통국악·케이팝(K-pop) 공연 등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준비되었다.

4월 27일(목) 이틀째 이어지는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 2023에서는,(주요 프로그램) 26일(수)에 이어 '해외 관세당국-우리 기업' 간 개별(1:1) 비즈니스 미팅 및 관세기술 전시회가 지속 진행되는 한편, 7개 세미나*가 개최됐다.

관세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 관세당국은 「마약 밀수 단속에 관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밀수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7일(목), 22개 관세당국 및 유럽연합마약범죄사무소,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사무국 등 4개 기관과 양자회의를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 ▲관세행정 혁신과 신기술(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관세행정 현대화와 국제기구 역할 ▲무역원활화와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국제 관세협력, ▲관세당국 간 수출입/원산지 정보교환 활성화, ▲전자상거래 증가에 대응한 정책과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외환거래, 환경범죄 단속 등을 위한 국제 관세협력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출관세 연 6.6조 원 이상 절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한·미, 한·EU, 한·중, 한·인도, 한·베트남, 한·아세안 6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2021년 1년간 약 58억 달러(한화 약 6.6조 원)의 수출관세 절감 혜택을 누렸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 이래 약 20년간 총 59개국(전 세계 GDP의 85%)과 FTA를 체결한 시점에서, FTA의 체결·활용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실증분석한 첫 사례로, 이를 통해 도출된 연간 수출관세 절감액 58억 달러(6.6조 원)은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기술개발 등을 통해 원가를 1.3% 절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이며, 정부가 FTA 체결·이행·활용을 위해 투입한 연간예산(2022년 기준 199억 원)과 비교해도 약 330배에 달한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FTA에 따른 시장개방이 당사국들 간 무역·투자를 촉진할 뿐 아니라 우리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향상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며, "이번에 도출된 관세 절감액은 2021년도에 주요 6개 FTA 활용만으로 얻은 성과인 만큼, 일본(RCEP, 2022년 2월 발효), 이스라엘(2022년 12월 발효) 등과의 FTA가 추가로 발효된 현재 기준 전체 FTA 활용으로 얻는 수출관세 절감 혜택은 이보다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이어서 노 실장은 "앞으로는 FTA 활용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가적인 관세 절감 가능성이 큰 지역(중국, 아세안, 베트남 등)과 품목(섬유, 농림수산물 등)에 대한 타기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수출 애로로 작용하는 통관절차, 해외인증 등의 비관세장벽 해소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별 동향

EU, CBAM 법안 최종 승인... 10월부터 시행

2023년 4월 25일, EU-27 정상들은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를 최종 승인했다. CBAM은 역내로 제품 수입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를 구매, 제출하는 제도로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막고 2050년 그린딜 달성을 위해 EU가 야심 차게 마련한 Fit For 55* 정책 패키지의 핵심 법안 중 하나이다.

*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패키지로 총 13개 법안으로 구성

이 법안은 벨기에·불가리아(기권), 폴란드(반대)를 제외한 24개국 정상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이사회를 통과했으며, 유럽의회 역시 4월 18일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됨으로써 EU 관보에 공식 게재될 예정이다. 법안은 관보 게재 후 이튿날부터 발효된다.

·(입법 추진 경과) 집행위 초안 발표('21.7.) → 이사회 일반적 접근 채택('22.3.) → 의회 입장 채택('22.6.) → 입법기관 간 3자 합의 도출('22.12.18.) → 의회 환경위 합의안 채택('23.2.8.) → 의회 본회의 승인('23.4.18.) → 이사회 승인(4.25.) → 관보 게재(예정) → 발효(예정)

▶ CBAM 적용 범위

CBAM 적용 대상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총 6개 품목이다. 최종 법안에는 집행위 초안 대비 수소 등 일부 하위품목이 추가됐으며, 철강의 경우 특정 전구체 및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도 신규 포함됐다. 수소의 경우 현재 EU의 수입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이나 그린딜 등 유럽 기후목표 이행으로 재생가능 수소 사용 급증이 예상돼 수소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초기단계부터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든 역외국이 규제 대상국이지만 EU-ETS가 적용 중이거나 연계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와 부징겐(Büsingen), 헬리골랜드(Heligoland), 리비뇨(Livigno), 세우타(Ceuta), 멜리야(Melilla) 등 EU령 지역은 적용이 면제된다.

▶ CBAM 절차

규제 적용 대상 제품을 수입하려는 수입자는 ① 공인 수입신고자 지위를 사전 획득해야 하며, ② CBAM인증서를 구매하고 ③ 매년 5월 31일까지 CBAM인증서 및 신고서 제출 후 ④ 6월30일까지 잔여 인증서를 청산해야 한다.

① 공인 수입신고자 신청: 수입신고자 신청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가능하며, 수입신고자가 소재한 관할당국의 CBAM 등록소(Registry)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다. CBAM등록소는 수입자 계정 및 인증서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종합 데이터베이스로 수입신고자 및 제조사 정보, EORI 번호, CBAM 계정번호, 인증서의 가격 및 구매, 환불·취소일자 등의 정보들이 기록된다.

수입신고자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수입자 연락처 및 EORI 번호, 수입품 정보(수량·가격), 역내 경제활동 정보, 5년간의 범죄기록증명서, 재정 상황 증빙 서류 등이며, 신청을 받은 관할당국은 여타 회원국 및 집행위와 15일(근무일 기준) 내 수입자의 과거 범죄기록, 재정건전성 등을 심사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 시, 수입신고자의 고유계정이 생성되며 CBAM 등록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1개 회원국 내 수입신고자 지위가 승인되는 경우, 전 EU 역내에 통용된다.

② CBAM 인증서 구매: 수입신고자는 전년도 수입품의 내재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중앙 플랫폼(common central platform, 인증서 거래를 담당)에서 구매해야 하며, 인증서 1개당 온실가스 배출량 1톤이 적용된다. 인증서 가격은 ETS배출권 경매 종가의 주당 평균가가 책정되며, 매주 첫 근무일에 EU관보에 가격이 게시될 예정이다. 인증서는 역내 적용되는 EU-ETS 무상할당 수준이 반영돼 무상할당이 제공되는 수량만큼 CBAM 인증서 수가 차감된다. 참고로 ETS 무상할당제는 2026년부터 연도별 점진 감축된 후 2034년을 기점으로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자료: EU이사회, EU집행위, Euractiv, Politico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2&pagePerCnt=10&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244%2C322%2C245%2C484%2C246%2C444%2C506%2C242%2C505&pNttSn=202244&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stCd=&sSearchVal=%EA%B4%80%EC%84%B8%EC%B2%AD%C2%B7%EA%B5%AD%EC%A0%9C%EC%9B%90%EC%82%B0%EC%A7%80%EC%A0%95%EB%B3%B4%EC%9B%90)

원산지 포괄확인서 작성방법

원산지(포괄)확인서 의의

-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
-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은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 가능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사용

필요성

-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료 및 최종제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절차를 마련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 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원산지증명 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함

작성주체

- 수출업체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나 부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업체가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해당 재료가 국내산인지 역외산인지 판단하여 관련서식에 의거 작성

작성절차

1	2	3	4	5	6	7
재료내역 확인용 서류준비 (BOM, Part List 등)	부품의 구입경로 확인	부품별 HS Code 확인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원산지 판단	원산지 확인서 작성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

유통경로

- 수출자는 공급받은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 생산자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을 요청하게 되고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바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함
- 요청받은 생산자는 해당 FT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 후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근거규정 및 서식

-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자료: FTA 포털 내 FTA 활용제도